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①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단,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기중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여비정액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별표8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구분표와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별표3 국외항공임정액표, 별표4 국외여비정액표, 별표5 국내이전비지급표, 별표6 국외이전비정액표, 별표7 국외준비금지급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표

구 분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지 급 액	월 700,000원	월 200,000원

<별표2> 회기수당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액
회 기 수 당	일 80,000원

별표3의 비교 5호 중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를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로 한다.

별표4의 비교 1호 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별표2)의”를 “(별표4)의”로 하며, 비교 2호 중 “국외여비규정 제22조를”를 “공무원여비규정 제23조를”로 하고, 비교 3호 중 “국외여비규정의”를 “공무원여비규정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제3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1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보수등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의회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12인 이상”을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바목 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를 “농수산물공사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중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